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30
----------	-------

발의연월일 : 2026. 6. 23

발 의 자 : 손 솔 · 정혜경 · 임미애  
전종덕 · 김종민 · 전진숙  
윤종오 · 용혜인 · 박민규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임인 유일한 기관이며 그간,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기관장을 역임해 왔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비상임 체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성 ·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업무와 겹치는 경우 선거관리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고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효율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직운영과 집행 등 직무 전반의 총괄은 사무총장이 해 오고 있음.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지 축소 인쇄 결정이 위원회 의결도 없이 2인의 전결로 이루어 짐.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명확히 하고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위원회 내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부 인사의 참여를 명시하여

자체 감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관위 조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며, 상임위원을 폐지함(안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조제1항).
-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1인 외에는 외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제1항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명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

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303호 선거관리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 第5條(委員長) ① 各級選舉管理委 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둔다.</p> <p>② ~ ④ (생략)</p> <p>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常任委員 또는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하며 委員長· 常任委員·副委員長이 모두 事 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중에서 臨時委員長을 互選하여 委員長 의 職務를 代行하게 한다.</p>	<p>법률 제21303호 선거관리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 第5條(委員長) ① ----- -----<u>두며, 중</u> <u>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u> <u>상임으로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 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 게 한다.</p> <p>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 을 때에는 상임위원 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 며 위원장·상임위원·부위 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 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 무를 대행하게 한다.</p>

第6條(常任委員)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와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委員長을 補佐하고 그 命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事務를 監督하게 하기 위하여 각 1人의 常任委員을 둔다.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 (생략)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생략)

②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政務職으로 하고 그 보수는 國務委員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常任委員은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생략)

<신설>

第6條(常任委員)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삭제>

③ (현행과 같음)

第12條(委員의 待遇)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의4(감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선거·정당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 주요 사무

2. 인사채용 및 예산집행에 관  
한 사무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  
령,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행  
위

4. 성범죄 사건

5. 국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감사요구 사항

6. 감사위원회가 감사가 필요하  
다고 의결한 사항

7.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명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지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명

2.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1  
명

3. 감사원장이 추천하는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감사위원회 위원은 법조계 · 학계 · 언론계 · 경제계 · 여성계 ·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추천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3.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4.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직무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이 경우 연관된 직무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

3항 후단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⑧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